



11개 조건별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매수인의 의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조건, 지정 장소, 버전을 항상 함께 쓰세요. 예: "FOB Busan Incoterms 2020".

조건	매수인에게 인도·위험 이전	주운송비 부담	보험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및 관세
모든 운송 수단					
EXW 공장인도	매도인 구내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둬, 적재하지 않음	매수인	의무 없음	매수인	매수인
FCA 운송인인도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	매수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CPT 운송비지급인도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매도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선적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매도인	매도인 부보 의무: ICC (A), 가액의 110%	매도인	매수인
DAP 도착지인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매도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DPU 도착지양하인도	지정 목적지, 양하 완료 상태	매도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DDP 관세지급인도	지정 목적지, 양하 준비된 상태	매도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도인
해상 및 내수로 운송					
FAS 선측인도	선적항 본선 선측	매수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FOB 본선인도	선적항 본선 선상	매수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CFR 운임포함인도	선적항 본선 선상	매도인	의무 없음	매도인	매수인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선적항 본선 선상	매도인	매도인 부보 의무: ICC (C), 가액의 110%	매도인	매수인

컨테이너 화물: FOB, CFR, CIF 대신 FCA, CPT, CIP

FAS, FOB, CFR, CIF는 물품을 본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를 위한 조건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선적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되므로, ICC는 컨테이너 화물에 FCA, CPT, CIP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위험은 본선에 적재될 때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C 조건에는 분기점이 두 개

CPT, CIP, CFR, CIF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해상에서 물품이 손상되면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CIF와 CIP에서는 매도인이 그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사항

DAT는 DPU로 이름이 바뀌었고 터미널뿐 아니라 어느 장소든 될 수 있습니다. CIP는 이제 전위험 담보인 ICC (A)를 요구하고, CIF는 여전히 ICC (C)만 요구합니다. FCA에서는 매수인의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어 신용장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인을 쓰는 대신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